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제 1 회

사건 2006고단 24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사 조귀장 기일 : 2006. 7. 4. 14:30
법원 주사보 임석출 장소 : 제522호 법정
검사 이상진 공개 여부 : 공개
고지된 다음 기일 : 2006. 8. 17.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이상진 출석

판사의 인정신문

성명: 김명호
주민등록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업: "
주거: "
본적: "

위 등본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임석출



판사(피고인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 진술

판사

피고인에게 모두 진술의 기회를 주다.

피고인

2006. 6. 30.자 서면에서 밝혔듯이 제3자에 의한 고발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을 구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아뢰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 제1항 나.의 '2005. 8. 2.경 부터'가 아니라 '2005. 9. 28.경 부터'이고, '서울고등법원 정문'이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동문'입니다.

그 외에 공소사실 제1항의 글귀 등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글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2항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피고인에게)

문 : 공소사실 제2항이 모르는 내용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고, 2006. 4. 6. 신문시에는 검사가 참여하지 않고 신문하였습니다.

문 : 직무유기애 대한 재정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 : 고등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판사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

변론 속행

2006. 7. 4.

법원 주사보

임석출



판사 조귀장

